

정수물품취득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강우)

가. 제안이유

'93년 주민등록 전산기기 안정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의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강과 행정사무 추진에 따른 부서별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을 위하여 정수물품인 컴퓨터 및 프린터의 취득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제안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신규취득 2개 품목 : 60대 → (156,000천원)

◦ 컴퓨터

• 수 량-386SX : 14대, 386DX : 16대

• 단 가-2,000천원

• 총금액-108,000천원

• 사용부서-구청 14개 실·과, 16개동

◦ 프린터

• 수 량-비충격식 프린터 30대

- 단 가-1,600천원
- 총금액-48,000천원
- 사용부서-구청 14개 실·과, 16개동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본 정수물품취득은 동의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강 및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한 것으로 행정의 능률화, 신속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로서 전량 동의합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, 찬성 10명, 기권 2명)